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. 3. 18 선고 2014가단1544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3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7㎡ 지상 블록구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32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8,441,100원과 이에 대한 2015. 1. 13.부터 2015. 3. 1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4. 11. 15.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무영

별지